

대전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0가단12659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교식, 우원진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기

변 론 종 결 2021. 9. 2.

판 결 선 고 2021. 10. 7.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6. 10. 2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으로부터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아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차전25371호로 양수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2. 12. 17. ‘C은 원고에게 6,518,913원 및 그 중 1,340,478원에 대하여 2012.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8.5%의 비율에 의한 금원, 그 중 1,577,573원에 대하여 2012.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3. 1. 4. 확정되었다(이하 위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

나. C의 부친인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10. 5.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F(상속지분 3/9)과 자녀인 G, C, 피고(각 상속지분 2/9)가 있다.

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6. 10. 27.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원고에 대하여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마.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21. 9. 2. 기준으로 원고가 C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원리금은 18,948,989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3, 5 내지 8,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2020. 11. 4.자 사실조회 결과 및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H,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주식회사 L,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C을 상대로 양수금에 기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2013. 1. 4. 확정되었고, 피고가 2016. 10.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시점에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그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8. 19.에 이르러서야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2) 원고가 2016. 10. 27.에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있었고 그 협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C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C에 대하여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채권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2)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의해 자신의 거의 유일한 재산¹⁾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인 2/9 지분에 관하여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은 이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사망하자 C을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피고가 모친인 F을 모시고 함께 살기를 희망하여 망인이 1973. 5.부터 사망시까지 거주하였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도록 한 것이어서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이상 C과 피고 등 망인의 상속인들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는 피고가 망인 사망 전인 2010. 8. 2.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망인과 함께 거주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어 이를 피고가 망인을 부양하여 왔고, 그에 대한 기여분을 감안하여 사해행위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기여분으로 인해 C의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또한 피고는 C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부담하던 채무는 소액의 금전소비대차 또는

신용카드대금 채무로서 그 금액 및 발생 원인에 비추어 피고와 C이 남매 사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C의 채무초과 여부를 알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남매 사이인 C과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가.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인 2/9 지분에 관하여 C과 피고 사이에 2016. 10. 27.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인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 부분의 개별공시지가가 2020. 1. 1. 기준 ㎡당 661,800원이고 이를 토대로 계산한 C의 상속지분의 가액이 19,530,453원이어서 위 토지 부분의 가액이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액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 부분에 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나,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가 자신의 피보전채권액을 넘어서 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은 건물과 그 부지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경제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C의 상속지분인 이 사건 부동산의 2/9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전체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호성

【별지】

부동산 목록

1. 대전광역시 중구 대 132.8㎡

2.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연와조 세와줄 단층 주택 38.21㎡ 같.

1) 앞서 본 이 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일인 2016. 10. 27. 기준으로 K 주식회사에 대한 12,688원 미만의, J 주식회사에 대하여 4,630원 미만의, L 주식회사에 대한 20,673원 미만의 보험해약환급금만을 보유하고 있었다.